##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안건

의안번호	제 38 - 1호	
보고 일자	2019. 10. 17.	

의결사항

# 금융중심지 추진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

제출자	금융위원회 위원장
제출 일자	2019. 10. 17.

#### 1. 의결주문

○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산하 「**금융중심지 추진 분과위원회 구성・운영(안)**」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## 2. 제안이유

○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심의·의결 기능을 보완 및 강화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구성· 유영

#### 3. 주요골자

#### ○ 구성 및 운영

- 다양한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민간위원 및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
- 논의 내용에 따라 <sup>①</sup>정책총괄, <sup>②</sup>금융인력 양성, <sup>③</sup>국제협력의 3개 분과로 구분하여 분과회의 개최

#### ㅇ 임무

-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**과제 발굴** 및 **정책 제언**을 통해 금융 중심지추진위원회의 **의사결정을 자문**
-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**정책연구용역 등에 반영**함으로써 **현장에** 기반한 금융중심지 **정책방향 수립 지원**

#### 4. 참고사항

관계법령 :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6조
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1조

# 금융중심지 추진 분과위원회 구성 · 운영(안)

2019. 10.

금융위원회

# I. 분과위원회 구성·운영 근거

- 금융중심지 정책방향 재정립을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,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치·운영
- □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(이하 '금추위')는 「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」(이하 '금융중심지법') 제6조에 따라 금융중심지 관련 주요 정책 및 추진 계획을 심의·의결
  - \* 금융중심지법 제6조제1항(금추위 주요 심의사항)
    - :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, 금융중심지 관련 중요 정책 수립, 정책 추진 상황 점검, 관계기관 의견 조정, 법령·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등
- □ (분과위원회) 금융중심지 정책방향에 대한 과제 발굴 및 세부논의 과제별 정책 제언을 위해 필요에 따라 구성
  - \* 금융중심지법 시행령 제11조제5항
    - : 위원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- **금추위의 의사결정을 자문**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조직되며, 금융중심지 관련 **전문가 집단**으로서의 역할 수행

# Ⅱ. 분과위원회 구성·운영방안

#### 1. 세부 구성방안

- □ (구성) 금추위 민간위원 일부 및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
  - 다양한 정책과제를 폭넓게 논의하기 위해 **실무진 위주**로 선정 하고, **분과위원장**은 금추위 민간위원을 선임

<	분과위원	회 위원	구성(	(안	) >
---	------	------	-----	----	-----

구분	내용
	민간위원 10인 중 5인 내외 선정
 금융회사(6)	유관기관 위원 추천 각 1인
연구기관(3)	금융연구원, 자본시장연구원, 보험연구원 소속 각 1인
계	총 14명

- \* 세부분과별 논의 내용에 따라 여러 분과에 유동적으로 참여
- □ (역할) 금융중심지법령에서 정하는 금추위 주요 심의사항에 대한 정책 자문 및 지원
  - ※ 금추위 주요 심의사항(금융중심지법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)
    - :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, 금융중심지 관련 중요 정책 수립 및 정책 추진상황 점검, 금융전문인력의 양성,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설치 등
- □ (세부분과) 세부 논의내용에 따라 <sup>①</sup>정책총괄, <sup>②</sup>금융인력 양성,
  <sup>⑥</sup>국제협력의 3개 분과로 구분하여 분과회의 개최
  - (정책총괄 분과) 금융중심지 정책의 기본방향·목표를 논의하고, 종합적인 추진전략 도출
  - (금융인력양성 분과) 금융전문인력 양성정책의 기본 방향 및 기존 정책의 추진실적 평가
  - (국제협력 분과) 외국계 금융회사 유치전략, 해외 IR 내실화 등 금융중심지 활성화 방안 논의

## 2. 운영 방안

- □ (기간) '19년 하반기 ~ '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
- □ (회의 운영) 논의내용 및 토론 필요성 등에 따라 **탄력적**으로 개최·운영
  - (금융위) 의제 발굴 → (위원) 의제 관련 사전 의견서 제출\*
    → (분과위원장) 회의 소집\*\* 및 주재
    - \* 논의의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자유롭게 서면으로 작성
  - \*\* 사전 의견서 취합내용을 바탕으로 대면회의 소집 여부를 결정
  - **분과위원장**은 의제에 따라 각 위원들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해당 **회의 소집 여부를 판단**
- □ (정책연계) 논의결과는 정책연구용역 및 정책방향 재정립에 반영하고, 관련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피드백
  - 필요시 분과위원, 정책과제별 관계부처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세부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

# □ 운영일정(안)

구분	내 용
분과위원회 Kick-off	■ 일시 : '19.11월 / 방식 : 대면 ■ 안건 : ① 위원별 소관 전문분야 소개 및 해당 분야 주요 이슈, ② 분과위원회 논의과제 발굴
정책총괄분과	■ 개시 : '19.11월~ / 방식 : 대면 또는 서면 ■ 안건(안) : 금융중심지 제5차 기본계획('20~'22) 수립방향
금융인력양성 분과	■ 개시 : '20년중 / 방식 : 대면 또는 서면 ■ 안건(안) : 부산 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 중간평가
국제협력분과	■ 개시 : '20년중 / 방식 : 대면 또는 서면 ■ 안건(안) :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

<sup>\* &#</sup>x27;정책총괄 분과'를 우선 신설하여 '19년 중 회의 개시